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1년 12월 21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2.21.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 12. 20.(월)	담당부서	가스산업과
담당과장	김진 과장(044-203-5230)	담 당 자	조성경 서기관(044-203-5231) 정대우 주무관(044-203-5236)

「석유사업법 시행령」 개정안 12.21(화) 국무회의 통과

- 외항선 연료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 전액 환급

- 국내 LNG 벙커링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에 기여

□ LNG(액화천연가스) 벙커링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**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에 LNG를 연료로 주입**하는 경우, 해당 LNG에 대한 **수입부과금을 전액 환급**하는 내용의 **「석유사업법 시행령」 일부 개정령안이 12.21(화) 국무회의에서 의결**되었다.

* 개정 조문 :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7조(부과금의 환급) 제1항에 제10호를 신설

> 10.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10조의11제3항에 따라 등록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수입한 천연가스를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경우
> (부칙 : '21.1.1.이후 공급한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적용)

** 벙커링(bunkering)은 선박에 연료를 주입한다는 뜻하며, LNG벙커링은 LNG를 원료로 움직이는 선박에 LNG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

○ 석유사업법은 외항선박에 대한 연료를 수출품으로 간주하여 수입부과금을 환급하고 있다. 하지만, **그간** 주요 선박연료였던 석유 수출입·정제업자가 수출입·생산한 **'석유제품' 중심으로 환급제도가 설계**됨에 따라, **선박 연료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규정이 없었다.**

○ 금번 개정규정은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에 **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한 천연가스에 대하여 적용**됨에 따라, 개정안 시행 이전 일부 물량도 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.

< 선박용 LNG 제세공과금 부과현황 >

구분	세율	회계	수출품에 대한 환급여부	비고
관세	도입국에 따라 0~3%	국세	환급	「관세환급특례법」 제3조
개별소비세	42원/kg	국세	환급	
수입부과금	**24.242원/kg**	에특회계	**'21.1.1일 물량부터 환급**	-
안전관리부담금	3.9원/Nm^3 (약 4.9원/kg)	에특회계	미환급	특정 정책목적의 경우 면제

□ 국제해사기구(IMO)의 선박배출가스 규제강화*로 LNG 추진선이 확대되는 등 **향후 본격적인 LNG벙커링 시장 출현에 대비**하여, 산업부는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를 신설하는 내용의 「도시가스사업법」을 개정·시행('20.8.5.)하고, **선박용 LNG 벙커링 시장 활성화의 법적 기반을 마련**한 바 있다.

* '20년부터 선박연료 황 함유량을 3.5%에서 0.5% 이하로 제한
→ 업계는 **①저유황유 사용, ②스크러버(저감장치) 설치, ③LNG 추진선 도입** 등으로 대응중

○ 이번 수입부과금 일괄 환급 조치는 이와 동일 취지에서 시행된 정책으로, 국내 업계의 **LNG 벙커링 사업 경제성이 확보**되어 우리나라가 친환경 선박에 이어 **글로벌 LNG 벙커링 산업에서도 선도적 위치**를 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또한, LNG 연료 생태계는 기존 유류 연료 생태계 대비 **대기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감축**할 수 있어 **친환경 경제로의 전환**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.

* LNG는 유류대비 황산화물(SO_x) 100%, 질소산화물(NO_x) 40~70%, 이산화탄소(CO_2) 25% 감축효과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급신청서 등 관련 세부내용을 규정한 하위규정*을 2개월내 마련할 예정이며, 이후 선박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 환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 질 예정이다.

*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·판매부과금의 징수,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정대우 주무관(☎ 044-203-523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